

제 362 호

1973. 4. 13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 백식
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 중랑발간실

전화 75-6444·6090

시보

차례

(○) 조례	
제 758 호	서울특별시 신림지구 및 신림추가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3
제 759 호	서울특별시 신림지구 및 신림추가지구 토지 구획정리 분담금부과징수조례 7
제 760 호	서울특별시 천호지구 토지 구획정리 분담금 부과징수조례 8
제 761 호	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창설처 조례증 개정조례 9
제 762 호	서울특별시 천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9
(○) 고시	
제 46 호	도시계획시설(소로) 일부 및 지적승인변경 13
제 47 호	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 및 지적승인변경 14
제 48 호	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 및 지적승인변경 14
제 49 호	임단외주택지조성사업 실시 계획인가 15
(○) 공고	
제 69 호	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적 업체지정 및 지적취소 공고 15
(○) 공인신고(개각) 신설서 (15개) 19
(○) 사법 27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	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	

서울특별시

조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신림지구 및 신림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1973년 4월 12일

(o) 서울특별시조례 제 758 호

서울특별시 신림지구 및 신림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

제 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림지구 및 신림추가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절차, 방법 및 사업비부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지구의범위) 이 지구는 신림지구 및 신림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와 청하고 사업시행지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, 봉천, 독산, 사당동등 1,641,555평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비)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세비지 매각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

부족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신림지구 및 신림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부담금 부과징수스케에 의한 분당금으로 보충한다.

제 4 조 (총전토지)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월의 면적은 법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인구밀 현재의 토지대장 (1) 일야대장 면적에 의한다. 다만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여 별도로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 것은 그 면적에 의한다.

제 5 조 (평정가격) 정리전후의 토지 각원의 평정가격은 그 위치, 현상, 면적, 고저, 관습, 교통,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규재산성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6 조 (토지의사용) 시장은 사실상 대물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주대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(토지의판매) 시장이 환지보정지불 지정하고 낭사를 할로 하면 운데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보정지불 주제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8 조 (증명및문찰) 1. 시장은 사업, 신증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.

<p>(2) 공전토지 및 희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계획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.</p> <p>제 9조 (환지계획의 기준) ① 이자구의 환지계획은 가능한 방법에 의하고 법 제 48조 내지 제 51조, 제 53조 및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자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근처에 해당하는 원칙으로 하여 제 3항 내지 제 7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② 공공용지 및 체리지와 지정으로 하여 종전의 친근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위치와 대동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이 있는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④ 절리후 풍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 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⑤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 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환지하거나 각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 권리면적보다 중환지의 면적은 제 5조에 의한 절리후의 평정가격에 의하여 이를 국정으로 정수한다.</p> <p>⑥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에 규정한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에 중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중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환지 면적은 전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공전으로 정수한다.</p> <p>⑦ 기준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의 다른 신설도로가 채정되거나 또는 공사로 인하여 고서가 심하여 건물주조를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수익을 다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</p>
---	--

<p>토지의 연도부담은 1/2 를 감할수 있다.</p> <p>(8) 공통부담은 충전과 토지의 형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차등을 두어 부담하게 할수 있다. 다만 현황과 지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1 금지 : 공부상대(坐) 또는 기존건물이 점유한 토지</p> <p>2. 2 금지 : 공구상전(田)의 토지</p> <p>3. 3 금지 : 공구상답(畜), 익(沃) 잡종지(雜種地) 및 기타 토지</p> <p>제 10조 (특별지의 환지계획) ① 충전 토지의 지적이 65m 를 미달되거나 또는 평정가격이 근소한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 1.2로 청산할 수 있다. 다만 사업과 시 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90%미만으로 환지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상의 유통지역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환지 할수 있다.</p> <p>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</p>	<p>기존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 11조 (환지예정지지정) 법 제 56조 외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는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그지경을 인정할 때에도 조한 같다.</p> <p>제 12조 (가산지예적지지정) 기존건물이나 공작물과 이전 또는 법 제 39조 외 규정에 의한 행정변경 행위의 경우 사업사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조의 환지예정지 지정전에 가산지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제 13조 (정산) 환지예적지가 지정된 때에는 증감면적에대한 거점살금을 징수 또는 교부할수 있으나 환지지분 공고가 있는 시는 주지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4조 (정산기준) ① 환지지분에 대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정산금은 환지로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환지평정가격을 승는 금액으로하여 이는 본금정수하거나 본금 교부할 수 있다.</p>
--	---

23-6 제 362호

시 보

1973.4.13

(2) 전방의 청 산금을 분기정수하게 나 불합리부 할 때에는 일대표를 기준 으로 한 이자율을 가산한다.	제 18 조 (대리인 제출) 당해 토지소유 자 및 임차권자가 서울특별시 내에 거 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제 15 조 (환지처분) (1)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공사의 일정 완료지연 또는 사업 종결과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중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.	제 19 조 (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명 의신고)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변경될 때 에는 자체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.
(2) 환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	제 20 조 (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) (1) 법
제 16 조 (체비지의 책적 및 판리처분) 사 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시가지 행 정과 축진과 광공시설물의 유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책정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판리처분하기 위하여 따 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.	제 39 조와 규칙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가 자비로 공사를 시공하고자 할 때 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.
제 17 조 (등기 완료 후의 통지) 시장은 제 65 조에 의한 족탁 등 결차용 종 로하였을 때에는 환지와 경지정서 및 판지설명서의 초본을 첨부하여 토지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(2) 전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동 부담율 1급지 (대지)로 적용할 수 있다
	제 21 조 (시행규칙) 이 조에서 행에 판하 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.
	부 칙 이 조에는 이 사업 시행일시 인가일로 부터 시행한다.

국부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
서울특별시 신림지구 및 신림주가지
구토지구획정리 분담금부과징수조례를
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 백석
1973년 4월 12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759 호

서울특별시신림지구 및 신림
주가지구토지구획정리분담
금부과징수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
법 제 127 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
(이하 «법»이라 한다) 제 75 조의
규정에 의하여 신림지구 및 신림
주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(이하
«구획정리»라 한다)에 소요되는
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지구
내 또는 인접지구내의 토지소유자
로부터 분담금을 부과 징수함에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
한다.

제 2 조 (부과총액) 분담금의 부과총
액은 구획정리를 위하여 지출되거나
지출될 일체의 경비에서 다음
각호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으
로 한다. 다만 부과금액은 법시
행령 제 38 조에 정한 기준액을
초과하지 못한다.

1. 보조금

2. 세비지 (보유지) 매각대금

3. 기타수입

제 3 조 (분담금 부과기준) ①운남금
은 구획정리인가전과 관리지정 당시
의 토지평정가격의 증자에 또는
관세지정면적의 증전 지목별 자동
에 대하여 부과한다. 증전 토지
평정가격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한
부동산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
농축전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관
지세분석에는 노선가산을 방법의
의 한다.

②현장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
자치단체의 소유지로서 관용 또는
공공의 용에 중하는 것에 대하여
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(분담금감면) 다음 각호의 1
에 해당할 때에는 분담금을 감면
할 수 있다.

1. 토지소유자가 분금하여야 할
분금액에 해당되는 토지를 제공
하였을 때

2. 구획정리를 위하여 노력이나
노력을 제공하였을 때

제 5 조 (납입방법) 분담금의 부과시
기, 납입기간, 납입방법, 납입장소는
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28-6 제 362 호 시 보 1973.4.13

<p>제 6 조 (세 남 청 부) 분금을 납입기 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세 남 청 부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.</p> <p>제 1 조 (설 산) 구획정리로 인하여 소지설 산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출납금을 수상하거나 또는 공공이 이를 위하여 세종사 할 수 있다.</p> <p>제 8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지구내 또는 인접지구내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출납금을 부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 (부과증액) 출납금의 부과증액은 구획정리로 우 하여 지출되거나 지출될 일체의 경비에서 다음 각호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 부과금액은 법시 행령 제 38 조에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조금 2. 세비지 / 보류지 매각대금 3. 기타수입 <p>제 3 조 (분금부과기준) ① 분금은 구획정리인가전과 환지지정 당시의 토지과정가격의 5%에 또는 환지지정부지의 총면적 일부 차등에 의하여 부과한다. 총면적 평정가격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한 부동산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통직선 방법에 의하여 산출이며 관지처분시에는 노선가산률방법에 의한다.</p> <p>② 전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두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 4 조 (분금감면) 다음 각호의 1에</p>
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천호지구 토지구획정리분금부과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장 양 대 속</p> <p>1973년 4월 12일</p> <p>⑤ 서울특별시 조례 제 362 호</p> <p>서울특별시 천호기·도지 구획정리분금부과징수조례</p> <p>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27 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(이하 «법»이라 한다) 제 7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호기구토지구획정리사업 (이하 «구획정리»라 한다)에</p>	<p>1. 보조금</p> <p>2. 세비지 / 보류지 매각대금</p> <p>3. 기타수입</p> <p>제 3 조 (분금부과기준) ① 분금은 구획정리인가전과 환지지정 당시의 토지과정가격의 5%에 또는 환지지정부지의 총면적 일부 차등에 의하여 부과한다. 총면적 평정가격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한 부동산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통직선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관지처분시에는 노선가산률방법에 의한다.</p> <p>② 전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두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 4 조 (분금감면) 다음 각호의 1에</p>

해당할 때에는 분당금을 삼면 날 수 있다.

1. 토지소유자가 분당하여야 할 분당금에 해당되는 토지를 제공하였을 때
2. 구획정리를 위하여 노력이나 불체를 제공하였을 때

제 5 조 (납입방법) 운남금의 부과시기, 납입기간, 납입방법, 납입장소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6 조 (제 납처분) 운남금을 납입기 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제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정수한다.

제 7 조 (결산) 구획정리로 인하여 수지결산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분당금을 추경하거나 또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제공사할 수 있다.

제 8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부총리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 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창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 대식

1973년 4월 12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761 호

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창
설치조례증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창설치조례증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조 중 『차량의 수리 그 부속품의 제작개량 및 검사』는 『차량의 수리 그 부속품의 제작, 개량, 검사, 자동차공속변조표의 제작 및 정비사 양성』으로 한다.

제 3조 중 제 4호를 제 6호로 하고
제 4호와 제 5호는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4. 자동차공속변조표 제작에 관한
사항

5. 자동차정비사 당성에 관한사항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부총리의 승인을 얻어 세장관
서울특별시 천호지구토지구획설정사업
시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당 대식

1973년 4월 12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762 호

서울특별시천호지구토지구획
정리사업시행조례

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토지구획

<p>정미사업법(이하『법』이라 한다)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호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 명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, 방법 및 사업비 부담 등이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지구의 범위) 이 지구는 천 호토지구획정리지구로 정하고 사업 시행지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성 농구 천호동, 길동, 신내동, 둔촌동, 명일동등 785,000평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사업비) 이 사업에 소요되 는 사업비는 세부지역별 수입으로 중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부 족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천 호지구토지구획정리·운영금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운임으로 보충한다.</p> <p>제4조(종전토지) 관리교부의 기준 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의 면적 은 법제32조의 구주에 의한 인 가일 현재의 토지개장 및 임야·대 장 면적에 의한다. 다만 서울특 별시장(이하『시장』이라 한다)이 필요하여 별도로 솔측 기타 방법 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 것은 그 면적에 의한다.</p> <p>제5조(평정가격) 관리교부의 토지 각 필의 평정가격은 그 위치, 형 상, 면적, 고저, 간접, 교통, 환경등 을 감작하여 시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6조(토지의 사용) 시장은 사업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구 내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토지의 관리) 시장이 환지에 경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 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에 경 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, 관리소 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 <p>제8조(증명 및 분할) ① 시장은 사업 기간 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재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. ② 종전토지 및 환지의 변경이나 눈할은 공공계획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.</p> <p>제9조(환지계획의 기준) ① 이 지구 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방법에 의 하고 법제48조 대지 제51조, 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 하여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전 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근처에 지정함 을 원칙으로 하며, 제3항 대지 제7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.</p>
---	--

<p>② 광물용지 및 농비지의 거정으로 인하여 충전 위치근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충전의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 로 비환자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기준 이 있는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 한 전율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④ 정리후 풍물 또는 광공의 용에 용하는 토지는 제 1 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⑤ 사업시행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 3 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기다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환지 하 거나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 권리연적 보다 승환지된 면 적은 제 5조에 의한 정리후의 평 정가격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 정수한다.</p> <p>⑥ 광세법 제 7 조 제 1 항에 규정 한 풍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 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적소하여 그 부처를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에 승환 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승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환 지 면적은 전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 정수한다.</p>	<p>⑦ 기존건물로서 주된 Nutzung 구역 의 면에 신설도로가 형성되거나 또는 공사로 인하여 고적가 실하 여 전율구조를 크게 변경하자 아 니하고는 사용수익을 다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동부담은 1/2 를 감할 수 있다.</p> <p>⑧ 항동부담은 충전의 토지의 영상 에 위하여 나음과 같이 구분하고 차단을 두어 두단하게 할 수 있 다. 다만 연장과 기록이 사이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 시장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 . 1 금지 : 국유상대(國有 地) 또는 기존건물이 접두한 소지 2 . 2 금지 : 풍물상전(風物上 地) 및 토지 3 . 3 금지 : 광수상당(礦水相當), 일(日) 장충지(雜蟲地) 및 기타 토지 제 10 조(특별지의 관리 계약) ① 광전 토지의 저작이 65 평이 미만이거나 또는 평정가격이 평소한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 로 청산할 수 있다. 다만 사업의 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90 평 미만으로 헌지교부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상의 풍 도지역에 서속되는 토지의 경우 에는 비환자될 수 있다.</p> <p>② 전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 회기 총사업금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</p>
---	---

적용하지 아니한다.	역 또는 사업종업의 형편상 부록 이 한 경우에는 공사장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.
제 11 조 (환지에 정지 지정) 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 정지 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 하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그 지침 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	② 환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 한 때에도 또한 같다.
제 12 조 (가환지에 정지 지정) 기존 전돌이나 풍차물의 이전 또는 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행위허가 등,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조의 환지에 정지 지정전에 가환지를 지 정할 수 있다.	제 16 조 (체비지의 채정 및 관리처분)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시가지 성세의 측면과 광공시설물의 유지 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채정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관리처분하 기 위하여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.
제 13 조 (청산) 환지에 정지가 지정 된 때에는 증감면적에 대한 가정 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 으나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때에 는 즉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.	제 17 조 (승기완료후의 봉지) 시장은 법 제 65조에 의한 축탁등기 결차 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난지 확정지 정서 및 환지설명서의 초본을 첨 부하여 토지소유권자 및 임차권자 에게 봉지하여야 한다.
제 14 조 (청산기준) ① 환지처분에 의 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환지로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 적과의 차이에 환지평준가격을 응 한 금액으로 하여 이는 분할징수 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. ② 전항의 청산금을 분할징수 하거 나 분할교부할 때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이자를 가산한다.	제 18 조 (대리인 계약) 당해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서울 특별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 거주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 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. 대리인을 변경할 때에 도 또한 같다.
제 15 조 (환지처분) ① 환지처분은 공 사가 완료된 후 행함은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공사의 일부 완료지	

제 362 호

시 보

1973.4.13 23-13

제 19 조 (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명의
신고)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
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
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
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
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.

제 20 조 (토지소유자의 자비공사)

(1)법제 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
소유자가 자비로 공사를 시공하고
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
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(2)전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
는 광용부담을 1 군저(대지)로
적용할 수 있다.

제 21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
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리는 이 사업시행일인 가입
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③서울특별시 고시 제 46 호

도시계획시설 (소로)

일부 및 저체승인변경

-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
(소로) 일부 및 저체승인 변경을
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제 13
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
표시한다.
-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과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세민
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
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3. 4. 12.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, 노 선 조 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목적	연장	기	점	종	점	비	교
기정	소로	2		6호	168호	복가파동 77(전)		복가파동 13-1			
변경	"	"	"	"	"	"	"	"	"		외치변경
기정	"	"	"	"	80	복가파동 13-1		"	"		
변경	"	"	"	"	"	"	"	"	"		위치변경
나. 도면: 별첨											

28-14 제362호

시

1973.4.13

⑨ 서울특별시 고시 제 47 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 및 지적승인변경 1. 서울특별시고시제 3 호(69.1.18)로 시 결정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 및 지적승인변경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지침부고시제 123 호(73.4.4)의 규정이 위하여 다음		용과 같이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보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		1973. 4. 12. 서울특별시장

가. 노선변경조서

구분	등급	유형	번호	주	원	연장	기	점	종	점	비고
기존	소로	4		(#)		61m	석관동 332-31		석관동 332-643		위치일부변경

별첨: 도면표지와 함께 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

⑩ 서울특별시고시제 48 호

- 도시계획시설(도로)
일부 및 지적승인변경
1. 서울특별시고시제 35 호(72.6.30)
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
적승인변경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
제 13 조 및 지침부고시제 123 호
(73.4.4)의 규정이 위하여 다음

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
사실에 비치하여 보지소유자 및
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73. 4. 12.

서울특별시장

가. 노선변경조서

구분	등급	유형	번호	주	원	연장	기	점	종	점	비고
기존	소로	2		3m	138m	쌍문동	424-10		쌍문동	424-94	

별첨: 도면표지와 함께 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.

제 36호

시 보

1973.4.13 28-15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49 호

일단의주택자 조성사업
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주택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조와 건설부고시제 123호(73.4.4)의 관한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세입증사실에 각자 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3. 4. 11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의위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작동 307의 3 일대
2. 사업의종류 : 일단의주택자 조성사업
명칭 : 반포지구주택자 조성사업
시행면적 : 153, 539 평
3. 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
대한주택공사사장 이주홍
4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
착수 : 1973. 4.
준공예정일 : 1974. 12. 31.

5. 수용또는 사용할 보지선불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(생략)
6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설명(생략)
7. 인가내용 별첨 인가도서(생략)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 제 69 호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증

생산자정업체지정 및

지정취소공고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증생산
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 지원교령
제 3조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
선행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증
생산자정업체와 지정 취소업체를
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73년 4월 11일

서울특별시장

28-16 제 362 호

시 보

1973.4.13

1. 신 규 치 정

지정 번호	기 업 제 명	대 표 자	소 재 지	수 출 품 명
102	삼원통상주식회사	서 영 일	종로구 종로 5가 255-3	가 발
210	서 광 사	김 영 배	중구명동 1가 72	귀금속 및 수정제품
314	무궁화주식회사	곽 창 후	동대문구종화동 119	메리야스
321	라비정공사	김 문 규	동대문구종화동 110-10	시 계
322	성 한 사	윤석봉	동대문구워경동 187-31	핸드백
323	백양스밸리스공업사	박 해 영	동대문구삼봉동 333-4	스밸리스 물
403	자이안트불산(주)	백 응 서	성동구구의동 211-1	양 말
455	한성주철제작소	김 성 호	성동구용봉동 190-2	나전칠기
480	생동기계공업주식회사	이 재 원	성동구화양동 168-27	횡편기, 원판기
481	주식회사고려파우	김 동 우	성동구신당동 17	의약품
482	부이연직공업사	박 인 양	성동구성내동 142	염색
483	일회제약주식회사	김 원 린	성동구송정동 43-16	인삼차
484	상보연직공업사	조 동 식	성동구성수동 2가 277-124	염색
485	동립양말공업사	이 봉 업	성동구성수동 1가 527	양 말
501	대양화학공업사	김 장 전	성북구종암동 115-7	설착제

지정 번호	기 업 체 명	대 표 자	소재지	수출 등형
508	삼 품 물 산 주식 회사	백봉기	성북구 수유동 23-6	여행·증가방
516	신성화학사진공업사	김준설	성북구 망학동 161-1	인화제
538	유황화학공업주식회사	정관식	성북구 하일곡동 9 50-293	암消灭제품
542	유일제약기계작소	이용한	성북구 정릉동 266-183	온도제·체온제·비증제
544	국제나일론주식회사	김홍기	성북구 창동 108-4	양·단
620	에신염색농업주식회사	이명호	서대문구 꽁동 85-9	염·색
629	주식회사 이승상사	백진일	서대문구 대조동 89-202	인·감·차
630	진성신업사	최승우	서대문구 역촌동 17-3	겔·벌
631	금강합성주식회사	최승현	서대문구 응암동 491-9	양·단
632	삼양물산주식회사	한승민	서대문구 갈현동 197-2	가·발
705	동남아성유공업사	손명규	마포구 도화 2동 39-4	에·타
718	창신첨유공업사	박창건	마포구 영리동 96	데티야스·인경면시
808	동양산업사	김관영	용산구 이태원 2동 212	에리야스
915	대한후보기공업주식회사	이상덕	영등포구 양평동 4가 15	금·금·금·금· 조·조·조·조· 험·험·험·험· 원·원·원·원· 구
928	중앙강철공업주식회사	박치희	영등포구 고척동 25-2	금속제주·상용· 도급자등의 부수품
931	조광염적주식회사	이언희	영등포구 영창동 203-4	염·색
968	용창첨유공업사	김생수	영등포구 염창동 63	염·색

28-18 제 362 호 시 보 73. 4. 13.

지정 번호	기 업 체 명	대 표 자	소 재 지	수 출 품 명
969	일신화학공업주식회사	임 오순	영동 포구 목동 191-56	합성수지제품
970	대영화학공업주식회사	고 광용	영동 포구 목동 191-40	합성수지제품
	예	35		

2. 지정 취 소

지정 번호	기 업 체 명	대 표 자	소 재 지	수 출 품 명	취 소 사 유
403	삼익 피아노사	이효익	성동구 성수동 2가 308-4	기타, 피아노	보고서 및 제출 및 73 수출제회전부
501	은하설업사	이 약	성북구 인암동 4가 23-2	가 발	업체명의 및 대표자변경
516	동양나염공장	김기해	성북구 수유동 41	나 염	업체명의 및 대표자변경
551	우성·상역주식회사	연규삼	성북구 장위동 230-83	가 발	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변경
921	한산기업사	박준덕	영동포구 신대방동 340-5	가 눈썹	자진취소요청
915	우진공업주식회사	양재희	영등포구 시흥동 663-5	스텐레스 양식기	국진기업으로 변경 폐업
928	대평비즈자수공업사	이기철	영동포구 봉천동 63-5	비즈백	대통공업사로 변경 폐업
931	신안물산주식회사	박광근	영동포구 상도 2동 255	나이론, 다우다	동창업 책공업사 로 변경, 계회
	제	8			

제 362 호

시 보

1973.4.13 28-19

공인회신조(개각)		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
1. 이 유	판인규정제3조 위반으로 개각	
2. 서체규격	전자체	2.4센치미터 정방형
3. 공인명	서울특별시 경찰국장	
4. 사용개시	73. 4. 10. 00 : 00	
5. 비처처·및 판수자	서울특별시 경찰국 경무과 경우파장	
6. 공인회모형		
공인회신조(개각)		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
1. 이 유	서울시직제76조(청와대경비대)로 69년 7월 2일 승 인된후 현재까지 신조하지 않았으므로 신조	
2. 서체규격	전자체	2.1센치미터 정방형
3. 공인명	청와대 경비대장인 및 개인	
4. 사용개시	73. 4. 10. 00 : 00	
5. 비처처·및판수자	청와대 경비대 행정계 행정제장	
6. 공인회모형		

28-20 제 362 호

시 보

1973.4.13

증인의 신조(개작)

1973년 4월 일
신청인 경찰국장

1. 이유	관인 규정제 3 조 위반으로 개작
2. 서체규격	전자체 2.1 센치미터 정방형
3. 공인명	충부경찰서장인 및 채안
4. 사용개시	73. 4. 10. 00:00
5. 비처처 및 판수자	충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
6. 공인의 모형	

증인의 신조(개작)

1973년 4월 일
신청인 경찰국장

1. 이유	관인 규정제 3 조 위반으로 개작
2. 서체규격	전자체 2.1 센치미터 정방형
3. 공인명	충주경찰서장인
4. 사용개시	73. 4. 10. 00:00
5. 비처처 및 판수자	충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
6. 공인의 모형	

제 362 호

시

1973. 4. 13. 28-21

증인의 신조 (개각)	
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	
1. 이 유	관인규정 제3조 위반으로 개각
2. 서체규격	전자체 2.1 센치미터 정방형
3. 증인명	남대문 경찰서장 인
4. 사용개시	73. 4. 10. 00 : 00
5. 비치처및판수자	남대문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
6. 증인의 모형	
증인의 신조 (개각)	
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	
1. 이 유	관인규정 제3조 위반으로 개각
2. 서체규격	전자체 2.1 센치미터 정방형
3. 증인명	서대문 경찰서장 인
4. 사용개시	73. 4. 10. 00 : 00
5. 비치처및판수자	서대문경찰서 경무과 과무과장
6. 증인의 모형	

28-32 제362호

서 봉

1973. 4. 13

공인회신조(개자)

1973년 4월
신청인 경찰국장

1. 이 유	판인구정 제3조 위반으로 개자
2. 서체규격	전자체 2.1 셀ച이터 정방형
3. 공인명	동대문경찰서장 인
4. 사용개시	73. 4. 10. 00 : 00
5. 비치처및관수자	동대문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
6. 공인외모형	

공인회신조(개자)

1973년 4월
신청인 경찰국장

1. 이 유	판인구정 제3조 위반으로 개자
2. 서체규격	전자체 2.1 셀ჩ이터 정방형
3. 공인명	용인경찰서장인
4. 사용개시	73. 4. 10. 00 : 00
5. 비치처및관수자	용인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
6. 공인외모형	

제 362 호 시 보 1973.4.13 28-23

공인의 신조 (개자)		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
1. 이 유	관인규정제 3조 위반으로 개자	
2. 서체 규격	전 자체	2.1 센치미터 정방형
3. 공인명	청량리경찰서장인	
4. 사용 개시	73. 4. 10. 00:00	
5. 비처처 및 관수자	청량리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	
6. 공인의 모형		

공인의 신조 (개자)

1973년 4월 일
신청인 경찰국장

공인의 신조 (개자)		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
1. 이 유	관인규정제 3조 위반으로 개자	
2. 서체 규격	전 자체	2.1 센치미터 정방형
3. 공인명	마포경찰서장인	
4. 사용 개시	73. 4. 10. 00:00	
5. 비처처 및 관수자	마포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	
6. 공인의 모형		

28-24 제362호 시 보 1973.4.13

공인의 신조 (개자)	
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	
1. 이 유	관인규정 제 3 조 위반으로 개자
2. 서 채 규격	전 자체 2.1 세로미터 정방형
3. 공 인 명	영등포경찰서장 인
4. 사 용 개 시	73. 4. 0 . 00:00
5. 비치처 및 관수자	영등포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
6. 공인의 모형	

공인의 신조 (개자)

1973년 4월 일
신청인 경찰국장

1. 이 유 관인규정 제 3 조 위반으로 개자	
2. 서 채 규격 전 자체 2.1 세로미터 정방형	
3. 공 인 명	성동경찰서장 인
4. 사 용 개 시	73. 4. 0 . 00:00
5. 비치처 및 관수자	성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
6. 공인의 모형	

제 362 호

시 브

1973.4.13 28-25

공인의 신조(개자)

1973년 4월 일
신청인 경찰국장

1. 이 유	관인규정 제 3 조 위반으로 개자
2. 서체 규격	전 자체 2.1 센치미터 정방형
3. 공인명	노량진경찰서장 인
4. 사용 개시	73. 4. 10. 00:00
5. 비처처 및 편수자	노량진경찰서 경주과 경무과장
6. 공인의 모형	

공인의 신조(개자)

1973년 4월 일
신청인 경찰국장

1. 이 유	관인규정 제 3 조 위반으로 개자
2. 서체 규격	전 자체 2.1 센치미터 정방형
3. 공인명	서부경찰서장 인
4. 사용 개시	73. 4. 10. 00:00
5. 비처처 및 편수자	서부경찰서 경주과 경무과장
6. 공인의 모형	

28-26 제362호

시 보

1973.4.13.

공인회견표(개각)

1973년 4월 일

신청인 경찰국장

1. 이 유	관인구성제3조 위반으로 개각
2. 서 채 규격	전 직제 2·1 세지 미터 정방형
3. 공 인 명	북부경찰서 장 인
4. 사 용 개 시	73. 4. 10. 00:00
5. 비처처 및 판수자	북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
6. 공 인 의 모 해	

사 례	
◎ 1973. 4. 11.	지방전 죽기 사보에 임함. 2 호봉을 급함. 성북구 근무를 명함.
운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충정 상정과 근무를 명함.	◎ 1973. 4. 12.
청소과 2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창희 운수행정과 근무를 명함.	유안수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. 10 호봉을 급함. 녹지과 근무를 명함.
마포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보 유인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 종로구보건소 지방의무기사 (보건지도과장) 양일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 용산구보건소 지방의무기사 (보건지도과장) 우정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 보은군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 김정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보건기원보에 임함. 3호봉을 급함. 종로구보건소 근무를 명함.	영등포병원 지방간호기사 홍규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 김진수 지방나무기원보 서보에 임함. 3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. 장경숙 지방간호기원보 서보에 임함.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.
총무과 기계기사보 조구현 경기도 전출을 명함. 대법원 전 죽기사 혜정일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	김충수 지방보건기원보시보에 임함.

28-28 제 362 호

시

보

1973.4.13.

영등포구보건소 균무률 명함. (행정) 성동구 주도사에 소 지방행정서기보 지방전기기원보에 임함. 5호봉을 금함. 지자체전설보부 균무봉 명함. 서대문구 조건부 지방전축기사보 지방전축기사보에 임함. 2호봉을 금함. 서대문구 (주택관리관실) 마련) 균무를 명함. 주택건설과 조건부 이 완식	주 효승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전술을 명함. ◎ 1973.4.13. 영등포구 지방행정사무판 (청소과장) 김성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명함.	지방전축기사보에 임함. 2호봉을 금함. 주택건설과 균무를 명함. 마포구 지방준무보조수 유효현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. 2호봉을 금함. 마포구 균무를 명함.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유효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전술을 명함.
서 울 특 별 시 장		